

- 대응**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십시오.
 P370+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Section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에 따라 적절한 소화제)을(를) 사용하십시오.
 P330 입을 씻어내시오.
 P301+P312 삼켜서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21 (Section 4. 응급조치 요령에 따라) 처치를 하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
 P332+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P362+P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십시오.
 P310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계속 씻으시오.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P342+P311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33+P313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 저장** P403+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십시오
- 폐기** P501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다.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NFPA 지수(0~4단계) : 보건=2, 화재=3, 반응=0
 물질의 흐름 또는 혼합에 의하여 정전기가 발생할 수 도 있음.

Section 3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1-부탄올(1-butanol)	n-butanol	71-36-3	100

Section 4 – 응급조치 요령

- 가.눈에 들어갔을 때** 많은 양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5분 이상 눈을 세척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 나.피부에 접촉했을 때**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즉시 벗고 15분 이상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을 것.
- 다.흡입했을 때** 노출로부터 환자를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정지 및 곤란시 인공호흡 실시 및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 라.먹었을 때**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 마.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진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Section 5 –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내알콜성 포말, 이산화탄소,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물
 부적절한 소화제 : 자료없음
- 나.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열 분해 생성물 : 탄소 산화물
- 다.화재 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 조치** 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킬 것.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등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후 화재진압을 하고 불가능시 즉각 철수 할 것.
 진화가 된 후이라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관계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Section 6 –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 가.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말 것. 흡입과 피부 접촉을 피하고 밀폐장소인 경우 공기호흡기 착용 및 환기시키고 발화원을 제거할 것.
- 나.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유출방지를 최소화하고 유출물질은 용기에 보관하여 회수할 것
- 다.정화 또는 제거방법** 유출물질은 모래, 점토, 기타 흡착물질로 흡수시킬 것

Section 7 – 취급 및 저장방법

가.안전취급요령

피부접촉, 증기흡입 및 눈에 침입 방지, 모든 용기는 접지시킬 것.
취급 후에는 노출 부위를 철저히 씻을 것.

**나.안전한 저장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운송시에는 정전기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 할 것.
화기, 열, 스파크, 불꽃 등에 가까이 두지 말 것.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용기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 할 것.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산화제 및 강산 등과 혼재를 금지 할 것.

Section 8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TWA : C 50 ppm, C 150mg/m3 -STEL : -

나.적절한 공학적 관리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며 작업시 반드시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기장치는 방폭설비를 할 것.

다.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유해성이 우려되므로 취급 시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독필터를 결합한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할 것
호흡용 보호구는 안전보건공단 인증을 필 할 것
작업환경에 따라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영향이 우려 될 경우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를 착용 할 것.

◦눈 보호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유해성이 우려되므로 취급 시 화학물질용 보안경을 착용 할 것

◦손 보호

화학물질 취급장소 근처에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안장치를 설치할 것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유해성이 우려되므로 취급 시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착용 할 것

◦신체 보호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유해성이 우려되므로 취급 시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 할 것

Section 9 – 물리화학적 특성

가.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액체(무채색 투명)	나.냄새	자극적인 냄새
다.냄새역치	자료없음	라.pH	자료없음
마.녹는점/어는점	-89°C	바.초기끓는점/끓는점 범위	117~118°C
사.인화점	29°C	야.증발속도	자료없음
자.인화성(고체,기체)	자료없음	차.인화 또는 폭발범위의 상한/하한	11.2% / 1.41%
카.증기압	6.7mmHg@25°C	타.용해도	80g/L@20°C
파.증기밀도	2.55	하.비중	0.81
거.n-옥탄올/물 분배계수	Log pow : 0.88	너.자연발화온도	340°C
더.분해온도	자료없음	러.점도	2.84cP@21°C
머.분자량	74.12		

Section 10 – 안정성 및 반응성

가.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중합하지 않음
나.피해야 할 조건 (정전기방전,충격,진동 등)	열, 스파크, 화염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 할 수도 있음
다.피해야 할 물질	산화제, 금속, 가연성 물질, 금속염
라.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열 분해 생성물 : 탄소 산화물

Section 11 – 독성에 관한 정보

가.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독성 (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경구: LD50 790mg/kg Rat 경피: LD50 3402mg/kg Rabbit 흡입: 증기 LC50 8000ppm 4hr Rat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극적이며 피부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눈에 자극, 각막 손상 등 눈 조직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호흡기 과민성	호흡기도 자극
◦ 피부 과민성	피부질환 및 알레르기
◦ 발암성	자료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자료없음
◦ 생식독성	자료없음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자료없음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킴
◦ 흡인 유해성	자료없음

Section 12 –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 100mg/l 96hr 갑각류: EC50 1983mg/l 48hr 조류: EC50 28mg/l 48hr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 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라. 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영향	자료없음

Section 13 –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적용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나.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혼합금지물질과 분리하여 폐기할 것.

Section 14 –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	1120
나. 유엔적정 선적명	BUTANOLS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인화성 물질)
라. 용기등급	III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해당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 F-E 유출시 비상조치 : S-D

Section 15 –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물질(측정주기 : 6개월) 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물질(진단주기 : 12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류 제2석유류
라. 폐기물관리법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R10Xn;R22Xi,R37/38-41R67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R10,R22,R37/38,R41,R67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S2,S7/9,S13,S26,S37/S39,S46

Section 16 – 그 밖의 참고사항

